

청년미래적금, 7.2일 13시 기준 누적 가입 신청자 200만명 넘겨

- 이번 주 금요일(7.3일) 18시30분까지 가입 가능
- 가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6월 22일 가입 신청을 시작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가 7.2일 13시 기준 누적 200만명을 넘어섰다.(누적 201.2만명)

가입 신청은 오는 7월 3일(금)까지 가능하다.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가입신청 종료 후 3주(7.6~7.24)간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결과는 7.24일(금)에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7.27일(월)부터 8.7일(금)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이후에는 매월 1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이 유지된다.

*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예: 급여이체 등)

청년미래적금 가입시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외에 신용점수 가점*도 부여되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참여를 통해 우대금리를 적용(0.2%p) 받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백만원 이상 납입시 5~10점 신용점수 가점 부여(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위한 가입 기간 및 납입액 산정시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및 납입기간 포함)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은 남은 가입신청 기간 동안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상세 정보는 청년미래적금 웹사이트 (fill4young.kinfo.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바로 3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훈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02-2100-1686)
			사무관	노지열 (02-2100-1688)
			주무관	신민영 (02-2100-1684)
<협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사업부	책임자	부 장	김미혜 (02-2128-8216)
		담당자	팀 장	김용석 (02-2128-8219)



핵심만
쑥쑥!

청년분들이 헛갈려하실 수 있는 부분 꼭 짚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

월 최대 **50만원**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

Q1 매월 50만원씩 적금에 납입하기가 부담스러운데, 꼭 50만원을 전부 납입해야하나요?

A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입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 가입 후 첫달은 **5만원** 납입
- 다음달은 **10만원** 납입
- 저축이 어려우신 달은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에 소득이 상승하여 가입소득요건을 초과하면 어떡하나요?

A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후 유지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기여금 및 기여금 지급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후 만기 전에 나이요건을 초과하셔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Q3 올해 만 36세인데 가입할 수 없나요?

A

- 청년미래적금 나이요건은 원칙적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 다만, 이번 가입기간은 '26.1월에서 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1991.1.1 ~ 1991.8.31일생)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나이 계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 1월 1일생 청년(만36세)이 육군 복무(18개월)를 마친 경우 연령 산정시 1991년 7월 1일생으로 간주되어 이번 최초 가입기간에 가입 가능합니다!

1990.1.1 출생 (가입 시 만 36세) → 육군 복무 18개월 → 1991.7.1로 간주 → 가입 가능! ✓

참고! 이번 최초 가입기간 ('26.6.22.~7.3.)에만 가입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닙니다!

TIP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응원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납입하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22 출시) 안내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이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금리

기본금리 5% + 우대금리 2~3%

※ 취급기관별 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 공시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지원
(6, 12%)

※ '26.1월에서 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91.1.1~'92.8.7 출생)은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적용)
※ 가입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구분	소득기준(①+② 동시충족)		기여금 매칭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중위소득 (맞벌이 2인가구*)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200% 이하 (250%이하)
	소상공인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중소 신구		12%
우대형	기업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150% 이하 (200%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 맞벌이 2인가구 :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자 본인(청년)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중소기업 신구·재직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근무(이직 횟수 2회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전 필수 체크포인트

-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는 '26.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단,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연계가일이 불가능하며,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있는 청년의 가입이 가능하며, 전년도('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진행합니다.
※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현재 복무 중인 병(兵) 급여가 있는 자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신규 취업 우대형 대상은 가입 신청일('26.6월~) 기준 전년도('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입니다.
- 일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은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우대형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전산연계 통해 심사 예정)
- '26.6월 가입신청 기간 중 가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6.12월(잠정)에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바로 3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